

# 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24,411,967	21,732,359
일반회계	699,533,599	20,986,008
특별회계	24,878,368	746,351
공기업특별회계	22,787,366	683,621
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	22,787,366	683,621
기타특별회계	2,091,002	62,73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206,579	36,197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884,423	26,53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2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